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35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의자 : 송석준 · 박덕흠 · 성일종
김예지 · 김선교 · 김성원
고동진 · 서범수 · 김형동
이종배 · 김미애 · 유상범
안철수 · 주진우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 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세율 조정 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7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